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 1505

제출년월일: 2023년 12월 20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TBS 출연금 지원 근거인 「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2024.1.1.字로 폐지 예정이었으나,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해제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폐지시행일을 유예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음
 - 조례 개정안 : 시행일 5개월 유예(2024.1.1. → 2024.6.1.)
- 나. 이에 따라 2024년 TBS의 출연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지정해제 시까지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개요

○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

○ 관련법령

- 법 률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조 례 :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우영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사업 (조례 제3조제1항)

-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
-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
-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
-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
-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·협력
-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·협찬 등 수익 사업
-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다. 출연금 편성

- 출연 필요성
 -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지정해제 시까지 급여, 퇴직급여, 조기희망퇴직수당 등을 출연
 - 기관 운영을 위한 청사 유지비 등 지원 필요
- 산출내역(안) : 9,297,697천원
 - 인 건 비 : 7,295,528천원(퇴직급여충당금, 조기희망퇴직수당 등)
 ※ 편성인원 기준 180명, 조기희망퇴직 112명 별도
 - 기본경비 : 664,298천원(4대 보험료)
 - 청사유지비 등 : 1.337.871천원(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등)

라. 기관현황

- 소 재 지 :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(에스플렉스센터)
- 규 모: 22,155 m² (약 6,714평)

○ 전경 및 위치도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예산 반영(예정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홍보담당관 방송홍보팀 안주희 (☎2133-6442)